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324 |
|----------|------|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 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 시설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시설의 사용허가 등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8조)
- 마. 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현풍공영버스정류장(이하 “정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6길 15-49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류장의 운영 및 관리
2.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과 그 사항의 관리
3. 정류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정류장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

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라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정차 하는 행위
2. 정류장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류장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등을 취소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나 대부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나 승낙 없이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류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2021.7.27. 일부개정, 2022.1.28. 시행)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